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금품ㆍ향응 등	100만원 미만		100만원 이상
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	수동	능동	100단원 의장
1. 위법·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게 제공한 경우	강등-감봉	해임-정직	파면-강등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 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 을 하지 아니한 경우	해임-정직	파면-강등	파면-해임
3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 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 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파면-강등	파면-해임	파면

※ 비고

- 1. "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 항제1호에 따른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「공무원 징 계령」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2. "직무관련자"와 "직무관련공무원"이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.